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

2007. 1. 8.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목 차

I . 2007년 연간업무 추진 체계 ----- 1

II . 중점추진과제 및 주요 업무 ----- 2

목표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 ----- 2

1.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중점》
2. 시설생활인 인권 증진 《중점》
3. 장애인 인권 증진 《중점》
4.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 《중점》
5. 국제 결혼자 및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중점》
6. 노인 인권 증진
7. 노동분야 취약 계층 인권 보호 강화

목표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9

1.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적용 강화
2. 미가입 협약 및 성안중인 인권 조약 가입 촉진
3.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지속 추진 《중점》

목표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10

1. 인권 침해 및 차별 판단지침 수립 《중점》
2. 인권 침해행위 조사 체계화

3. 방문·직권조사를 통한 조사의 현장성 강화
4. 사회적 약자·소수자 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목표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13

1. 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중점》
2. 학교 인권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
3. 공공부문 인권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
4. 시민분야 인권교육 도입 및 문화콘텐츠 개발 보급

목표5: 위원회의 역량 강화 ----- 17

1.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중점》
2. 인권관련 주요 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 《중점》
3. 인권 정책의 기획·총괄·평가·조정 기능 강화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단체 협력 강화
5. 인권감수성 고양을 위한 홍보 내실화
6. 위원회 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내부 역량 강화
7. 위원회 법률 지원 체계 정비

I . 2007년 연간업무 추진 체계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구현

목표

-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
- ▣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 ▣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 위원회의 역량 강화

중점

추진 과제

-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 시설생활인 인권 증진(계속)
- 장애인 인권 증진
-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
- 국제 결혼자 및 이주 노동자 인권 증진(계속)
-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지속 추진
- 인권침해 및 차별판단 지침 수립(계속)
- 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 인권관련 주요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

추진 전략

위원회의 정책조사교육홍보 역량의 통합적유기적 결합에 의한 상기 과제의 효과적 달성

II.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 업무

목표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강화

1.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중점》

□ 목적 및 취지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체계적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 수립
- 아동·청소년 정책업무의 유기적·통일적 추진으로 실질적 인권 증진 도모

□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 정책기획회의 구성·운영
- 아동인권전문위원회 적극 활용
- 관련 부처(청소년위,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와 적극적 정책협의회 추진
-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 기 실시한 실태조사의 정책과제화
-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령 및 정책 과제 적극 검토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검토 및 후속조치 점검을 통한 지속적 정책개선 권고

○ ‘아동 인권존중 지역사회’ 만들기

- 인권교육의 지역적 확산과 인권존중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정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인권워크숍·토론회·홍보캠페인·인권교육·지역 네트워크 구축

2. 시설생활인 인권 증진 《중점》

□ 목적 및 취지

- 최저 수준의 인권 상황에 처해 있는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전략적, 통합적 업무 추진 필요
- 2007년에는 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인권교육·정책권고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집중함으로써 실질적 인권 개선 도모

□ 주요 내용

- 시설생활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기획회의 구성·운영
- 다수인보호시설전문위원회 적극 활용
-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 방문 및 직권조사 적극 실시
- 면전진정의 실질화로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기회 확대
-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관련 인권침해 판단지침 수립
- 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 증진 《중점》

□ 목적 및 취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상응하는 장애인 관련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검토
- 장애문제로 차별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권고를 위한 실태조사 및 기획조사의 체계적 실시

□ 주요 내용

- 장애인 인권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접근
 - 장애인 인권증진 추진계획 수립, 위원회 역량의 효과적 투입
 - 장애차별전문위원회·정신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적극 활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진행사항 모니터링 및 이에 상응하는 정책체계 수립
-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과제 적극 검토
-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및 기획조사 강화
- 국제인권규약으로 채택된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가입 촉구
- 장애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확대
- 기존 실태조사의 정책 과제화 적극 추진
- 정신보건 교재개발(연구 용역)
-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

4. 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강화 《중점》

□ 목적 및 취지

- 사회적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 등을 감안할 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기초생활 취약집단(차상위 계층 포함)에 대한 대책 필요
- 특히 보건, 교육, 주거, 의료 등 생존권적 권리 영역에서의 정부 정책과 법제에 대한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사회권전문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정책기획회의를 구성·운영
- 사회권 포럼 및 전문위원회를 통한 주요과제 진행 사항의 주기적 점검과 주요 논의 사항 정책 과제화 추진
- 기 실시한 인권상황실태조사(주거, 아동학대, 노인차별 등)에 기초한 빈곤계층 권리증진 방안 검토
- 노숙인, 빈곤계층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 교육, 의료 등 세부영역 검토 과제 구체화
- 정책 이행 과제 검토
 - 주민등록 말소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박탈에 관한 정책 검토 등
- 2007년 인권대회(가칭) 개최
 - 빈곤층 여성·노인·아동·장애인 등 사회권 보장 방안 논의
- 기초생활 취약계층 관련 실태조사 적극 추진

5. 국제 결혼자 및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중점》

□ 목적 및 취지

- 국제결혼자 및 이주노동자는 그 역할 및 비중에 비하여 아직 권리보장이 미흡한 실정임
-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기본권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연구가 필요함

□ 주요 내용

- 국제결혼자 및 이주노동자 인권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접근 시도
 - 이주인권포럼 및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운영 적극 활용
 - 개별 과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적극 활용
- 국제결혼자 및 이주노동자 관련 실태조사 적극 추진 및 정책과제 발굴
 -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과 토론회·간담회 등 실시
-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및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등 이주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노인 인권 증진

- 2006년 인권상황실태조사(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를 바탕으로 세부 정책과제 구체화 추진

- 사회권포럼 등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통한 노인층의 시급한 기초생활 분야 보호방안 마련
- 노인 주거, 의료, 소득지원 등 기초생활분야 권리보호 중심으로 세부과제 발굴, 정책·법제개선 추진

7. 노동분야 취약 계층 인권 보호 강화

- 노동 분야의 많은 계층이 아직도 권리보호에서 제도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인권상황 파악과 시급한 보호 정책 조치가 요구됨
- 2006년 인권상황실태조사 등에 기초한 취약대상 권리보호방안 검토
 - 청소용역근로자, 건설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
 - 특수고용종사 노동자 인권개선방안 검토
- 정책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한 제도적 보호 취약대상 검토 및 정책과제 구체화

목표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1. 국제 인권조약의 국내법적 적용 강화

- 6대 인권조약의 최종견해와 국내법 및 국내현실의 비교를 통한 정책권고 추진
- 아동권리협약 해설집 작성 및 협약의 국내법 정합성관련 실태조사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심포지엄 개최
- 국제 인권규약 관련 토론회 적극 추진
 - 자유권 관련,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 정부보고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매뉴얼 개발
- 아·태지역 인권 이슈 관련 국제 심포지엄 개최

2. 미가입 협약 및 성안중인 인권조약 가입 촉진

- 미가입 협약 등에 대한 가입 촉진 및 후속조치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등
- 성안중인 인권조약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등

3. 북한인권 관련 사업 지속 추진 《중점》

□ 목적 및 취지

- 2006년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에 따른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포괄적 접근 시도 필요
- 우선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새터민에 대한 인권증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관련 정책 방안 다각화 모색

□ 주요 내용

- 북한인권 관련 동향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모색
- 국제인권 기구·국내외 비정부기구·전문가 등과의 협력관계 활성화
- 북한인권 관련 정책관계자협의회 지속 추진
- 북한인권 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 새터민 관련 법령·제도·정책에 대한 체계적 검토
 - 새터민 부문별 간담회 추진 등
- 새터민 당사자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

목표3: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1. 인권침해 및 차별 판단지침 수립 《중점》

□ 목적 및 취지

-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마련 및 일관성 있는 판단 적용으로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
- 교도소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판단지침을 개발함으로써 인권 취약영역인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 인권보호에 기여

□ 주요 내용

- 교정·구금시설 및 다수인 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사건에 대한 유형별 분석 및 판단지침(안) 마련
 - 관련 단체·외부전문가와의 토론회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
- 「차별판단지침 TF」 지속 운영
 - 총론 및 17개 차별사유별/영역별 지침, 성희롱 등 지침안 작성
 - 차별판단지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2. 인권 침해행위 조사 체계화

○ 방문조사 표준 모델 개발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맞추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문조사 절차 및 지침' 개발 추진

○ 경찰청 업무 관련 인권업무수행 평가 지침 개발

- 경찰관련 진정사건이 인권침해사건 중 20%가량 차지하고 있음
- 연구용역으로 경찰관서 평가지침서를 매뉴얼 형식으로 개발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 인권단체 등과 함께 경찰서별 평가 공동 프로젝트 추진

○ 결정문 형식 분석 및 개선안 수립

- 통일성과 체계성을 갖춘 위원회 결정문 형식 수립
- 유럽 인권법원, 국내 법원 및 각종 위원회의 사례 분석

3. 방문·직권조사를 통한 조사의 현장성 강화

- 유치장 및 군 영창 방문조사 지속 추진
- 구금시설 방문조사 지속 추진
- 다수인보호시설 방문 및 직권조사 적극 실시
- 인권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 및 기획조사 강화

4. 사회적 약자·소수자 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 맞춤형 상담활동 전개

- 면전진정 활성화 및 순회상담의 지속적 추진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시설생활인 수용자 등의 위원회 접근기회 확대
- 상담버스를 이용한 인권 취약지역 순회상담 확대
- 인권위 직원 1일 상담원제 추진
- 전문상담위원제(변호사 등) 운영

○ 다수인 보호시설 진정기회 확대

- 다수인 보호시설내 진정함 설치 점검 및 독려
- 적극적 면전진정과 이에 대한 홍보로 시설 생활인 권리 인식 제고
- 다수인 보호시설 관계자에 대한 진정관련 실무교육 실시

○ 상담 역량 강화 및 적극 활용

- 활발한 기초조사를 통한 업무의 선택과 집중 도모
- 면전진정 및 상담 능력 전문성 강화
- 지역사무소의 인적·물적 역량 적극 활용(지역사무소)

목표4: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1. 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중점》

□ 목적 및 취지

- 인권교육 대상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장기적 발전계획 수립
- 국가차원의 인권교육 실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정

□ 추진내용

-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
 - 인권교육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운영
- ‘인권교육법’ 입법화
 - 인권교육법제화 TF의 법안을 토대로 2007년내 입법 추진
- 인권교육원 설립 추진
 - 조직, 인원, 기능 등 교육원 설립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2. 학교인권교육 기반 구축 및 제도화

- 학교내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추진을 위한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구성·운영
- 친 인권적 교과서 도입 추진
 -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새 교과서가 집필단계에서부터 친 인권적으로 제작되도록 교과서 구성

방향 및 기준 제시

- 제2기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2년차) 및 확산
 -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내재화하고 확산하기위한 최종보고회 및 국제워크숍 개최
 - 미 지정 시·도교육청 대상 제3기 인권교육연구학교 운영 및 '인권교육촉진단'을 구성하여 필요한 기술 및 프로그램개발비 등 지원
- 온/오프라인 인권연수과정 운영
 - 사이버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콘텐츠 보장
 -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교육과정 및 집합연수과정 운영
 - 인권에 대한 주제별, 분야별, 지역별 강사 풀을 구축하여 인권교육포럼을 운영하고 인권교육가 연수과정 개설
- 학생 인권 증진활동 강화
 - 학교관리자(교장 및 장학관) 대상 관할 교육청 단위 순회방식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워크숍 실시
 - 학생인권침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인권친화적 학교환경조성 가이드 개발

3. 공공부문 인권교육 기반구축 및 제도화

- 공공부문 인권교육의 자체 실시기반 형성 정도에 따라 각 분야를 신규·형성·심화 단계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접근 전략 구사
 -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제고 분야: 출입국, 통일 행정분야(신규단계)

- 인권교육 제도화 분야: 군대와 사회복지 분야(형성단계)
- 인권교육 실효성 확보 분야: 검·경 및 교정 분야(심화단계)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상대로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공공부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 인권교육 수요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저비용 인권교육 연수과정 개발·운영, 위원회 방문프로그램 활성화, 기관 방문 인권문화행사 개최 등 추진
- 인권교육 기술지원 체계화
 - 인권교육 지원업무에 관한 위원회 규칙 제정, 인권교육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분야 인권강사 제도 운영 등 추진
- 국내외 협력 강화
 - 4대 권역(아시아, 대양주, 북미, 유럽)별 대표적 인권교육 기관과 국제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 개도국 국가인권기구(NI) 직원 초청 인권교육 워크숍 개최
 - 국내 인권교육 관련기관과 공동 협력사업 등 추진

4. 시민분야 인권교육 도입 및 문화콘텐츠 개발 보급

- 기업·언론인 등 ‘인권옹호집단’ 대상 교육 확산
 - 국제워크숍 개최, 기업내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추진, 기업 인권교육 강사 양성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언론사 신입기자 및 방송제작자(PD, 구성작가, 기자 등)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언론인 재교육 과정에 인권교육 과정 개설
추진

○ 평생교육시설 및 사회취약계층 인권교육 강화

- 대학부설 평생학습원에 인권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시설 중
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노인, 아동, 외국인 등 대상 지역별 인권교육 실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 차별을 주제로 한 인권애니메이션(두번째) 개발 및 배급
- 인권영화 프로젝트(네번째) 제작
- 기 개발 인권문화콘텐츠의 보급 및 활용도 제고 추진

목표5: 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중점》

□ 목적 및 취지

- 유엔인권이사회 출범과 함께 국제인권 문제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국가인권기구, 유엔 등 국제인권 관련 기구간의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 우리 위원회 인권정책 성과와 추진상황을 국제적으로 알림으로써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제고 도모

□ 추진 내용

- 체계적인 국제홍보 및 국제협력 추진과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계획 수립
 - 국제협력 및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기획 TF 구성 및 운영
 - 국제연대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위원회 계획 및 일정 마련
 - 국제인권전문위원회의 적극 활용
- 위원회 국제 교류·협력 및 국제역량 강화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ICC),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연례회의를 통한 국제 교류·협력 및 위원회 위상제고
 - 국제인권 전문가 초청 강좌 개설
 - APF 예산에 의한 조사관 훈련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APF 직원과견을 통한 국제인권 매커니즘 훈련 등
 - 국가인권기구, 유엔 등 국제기관간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 및 교류 확대 (일본, 중국, 동구권 체제 전환국 NI 설립 지원)
 - 인권교육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기술지원
- 국제적 수준의 영문자료 생산 및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 위원회 활동성과 및 소개를 위한 언어별 키트 제작·배포
 - 영문 뉴스레터 제공 지속 추진
 - UN 등 국제기구의 인권관련 동향 모니터링
 - 인권교육 프로그램 영문화
- 국제적 인권정보센터로서 주요 국제 웹사이트와 정보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수준의 영문자료 생산 및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UN 및 국제 인권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ICC 에서 비중있는 역할 수행 등을 통해 위원회의 국제적 위상 강화

2. 인권관련 주요 재판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출 《중점》

□ 목적 및 취지

- 인권관련 최근 국제 동향·국제적 기준, 우리 위원회의 최근 활동 사항 등을 법원·헌법재판소에 제공하여 인권기준이 재판 실무에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중요재판·판례를 모니터링하여 법원·헌법재판소 의견 제출권 실질 운영

□ 추진 내용

- 법원·헌법재판소에 인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법원 등의 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업무협조 체계 추진
- 법원·헌법재판소에 의견 개진을 위한 업무 추진체계 구축
 - 위원회 기능별로 업무분장하여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 구축
 - 기능별 역할: 재판연구관에 대한 각종 자료 제공, 간담회 추진, 판례분석 등
- 인권관련 중요 재판 및 판례 모니터링 및 의견 제출
 - 진정과 동일한 사건이 법원 등에 계류되어 있어 법에 의해 각하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의견을 표명하여 인권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조치
 - 중요재판에 대한 의견 제출로 동시대 인권수준에 맞는 판례 정립 추진
- 국제인권기준의 재판규범성 인정 관련 실태조사 추진 검토

3. 인권 정책의 기획·총괄·평가·조정 기능 강화

- 정책 분석·평가 계획 수립 및 정책평가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 각 팀들의 인권 정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및 정례 협의
 - '07년 인권정책 추진상황 평가보고서 작성 :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
- 2007년 이후 위원회 중장기 발전전략 및 인권정책 추진계획 검토

- 2007년 위원회 중점정책과제 선정 및 종합적·체계적인 활동계획안 마련
 - 기획조사, 인권교육, 정책권고 등을 망라하여 통합적, 유기적 정책추진
- 정부의 연간 입법계획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사전 모니터링

4.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단체 협력 강화

- 협력업무개선을 위한 협력업무 기본계획 작성
 - 본부(팀) 별 협력업무 담당자 지정
 - 위원회와 단체간 인력의 상호과건제 구상
- 협력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시행
- 단체지원 사업의 안정화
 - 인권단체 협력사업 선정 평가방식 개선
- 위원회와 관련된 국민, 전문가, 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월간인권구독자, 휴먼레터 구독자, 각 팀에서 제출한 리스트 종합 정비
- 각 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유별 유관단체들과 정기적 간담회, 토론회 개최, 이를 통한 정책 쟁점 발굴
 - 성차별팀의 성차별 업무 통합 2주년 기념 간담회
 - 이주인권팀의 이주인권 관련 단체 간담회

5. 인권감수성 고양을 위한 홍보 내실화

- 위원회 정책 홍보 매체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다양화하며 배포처를 확대해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 홍보역량강화 및 홍보체제 개선
 - 홍보관련 지원서비스 체계화, '인권언론' 커뮤니티 구축
 - 홍보과제선정, 중요현안 발생시 간담회 지속개최
- 정책홍보 내실화 다변화
 - 홍보매체 독자 배가 및 발송방식 변경여부 확정
 - 공익광고 추진, 지역사무소와 공동캠페인 전개
- 월간<인권> 발행 및 배포 내실화
 - 연간계획수립 계획성있는 발행 체제 구축(배포처 상시 점검)

6. 위원회 혁신의 지속적 추진과 내부 역량 강화

- 위원회 업무관리의 표준화·시스템화
 - 정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대비
 - 위원회 업무변화에 따른 기능분류체계(BRM)의 지속적인 관리와 업무관리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추진
 - 업무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 적용 단계적 실시

- 성과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정한 평가 추진
 - 국가인권위 3개년 인권증진행동계획 및 2007년도 연간업무와 성과관리의 일관성 유지
 - 분기별 실행계획 수립·점검 및 평가
 - 팀장과 팀원간 분기별 성과면담을 통한 관리자의 '성과리더' 역할 강화
 - 성과관리정보화시스템에 의한 성과관리 추진
-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 대국회 업무전략 강화
 - 법사위 위원장·간사·소 법사위원에게 적극적 사업설명 등
 - 국회 입법 및 의정 지원 활동 강화
 - 국회와 국가인권기구와 적극적 관계 형성
 - 국제의원연맹(IPU) 국제 심포지엄 공동 주최 검토
 - 입법 및 의정지원 자료 발간
- 이용자 중심의 인권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인권 주제별, 영역별 및 분야별 통합검색이 용이하도록 데이터표준화 및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성
 - 진정, 민원, 정보공개 등 온라인 서비스 창구 단일화 및 전문화·특화된 『인권상담전문포털』 개발
-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

7. 위원회 법률 지원 체계 정비

- 위원회법, 시행령 및 규칙 (훈령, 지침 포함) 개정
 - 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추진
 - 위원회 권한위임규정 검토
- 대한민국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국내예방기구 지정 대비 법률검토 및 법·시행령 개정안 준비